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홍기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62

발의연월일: 2024. 6. 24.

발 의 자:홍기원·이병진·박희승

권칠승 • 민형배 • 이정문

조승래ㆍ허 영ㆍ윤호중

이연희 · 조정식 의위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제9조제1항제1호에서 '재한외국인'과 '불법체류외국인'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면서 '불법체류외국인'을 법률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.

그러나 이러한 '불법체류'용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'미등록 체류 상태'이거나 '체류 기간 경과 상태'인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혐오 등 부정적 인식을 준다고 지적하고 '불법체류'용어 사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왔음.

이에 '불법체류외국인'을 '체류자격위반자'로 용어를 변경하여 이주 민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(안 제9조제1항제 1호).

법률 제 호
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1항제1호 중 "불법체류외국인"을 "체류자격위반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정책의 연구・추진 등) ①	제9조(정책의 연구·추진 등) ①
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,	
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	
에 대한 평가, 위원회 및 실무	
위원회의 구성・운영 등이 효	
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	
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	
야 한다.	
1. 재한외국인, 불법체류외국인	1 <u>체류자격위반자</u>
및 제15조에 따른 귀화자에	
관한 실태 조사	
2. ~ 6. (생 략)	2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